

5. 海外建設促進法 改正法律

法律 第4,573號 1993. 8.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등록과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등 해외건설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산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공사”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라 함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건축·산업설비와 금강구조물·전기·전기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해외건설업”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업자”라 함은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라 함은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

제4조(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로 본다.

제5조(해외건설진흥계획의 수립등) 건설

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 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해외건설업의 등록

제6조(해외건설업의 등록) ①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전기통신공사업법의 허가를 받은 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6.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

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7.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8. 무역업자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2항에 규정된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부투자기관관리기준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공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투

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외건설업자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 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외건설업의 등록기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해외건설산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해외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법인

제9조(등록의 갱신) ①해외건설업자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갱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외공사의 수행계획신고 및 보고

제10조(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해외공사수행계획의 신고) ①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해외공사수행계획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긴급히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의 통지) ①건설부장관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외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해외공사상황보고)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해외공사의 조정·지원등

제14조(수주경합조정) ① 건설부장관은 동일한 해외공사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수주경합으로 인한 수주질서의 문란이나 대외신용의 손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하거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조정의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진출업자의 지정등) ① 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

의 방지 및 해외건설시장의 여건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별 또는 지역별 당해 국가 또는 지역에 진출할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건설한 경영과 해외공사의 부실수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자와 그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우수해외건설업자의 지정등) ①

건설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수주실적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해외건설업자(이하 "우수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 지정하여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개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우수업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기금의 우선 지원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합작수주시공의 권리고등) ①건설

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대규모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업자 2인이상의 합작수주 및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작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기술개발)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해외건설진흥기금

제19조(해외건설진흥기금의 설치) 해외건설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해외건설업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의 출연방법 및 산출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기술용역의 제공 및 국제협력
2. 선진기술의 도입 및 개발
3. 새로운 해외건설시장개척 및 사전조사비의 지원
4.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시공자에 대한 지원
5.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6. 기타 해외건설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등) ①기금은 건설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융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해외건설협회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등) ①해외건설업자는 그 권익보호와 해외건설활동의 자율적 규제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을 한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⑤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되며, 해외건설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모집·분석
2.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

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보전 및 해외건설활동의 자율적 규제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응자·차관과 보증의 알선
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5조(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의 운영·의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협회의 임원등) ①협회에 회장 1인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협회의 임원수·임기 및 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도·감독) 건설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감독

제29조(영업의 정지처분) ①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해외공사의 부실수행 또는 부정행위로 현저하게 국위를 손상시킨 때
2. 해외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외적 공신력을 추락시킨 때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조정을 거부한 때
4.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한 정부시책을 누설하여 국가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위사실유포·배부등으로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다른 해외건설업자의 해외공사의 수행을 방해한 때
2. 낙찰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포기한 때
3. 사전조사나 시장정보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해외건설업자의 자료를 부당하게 이용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30조(해외건설업의 등록취소) 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건설업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면허·허가·등록등이 취소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인 해외건설업자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한 정부시책을 누설하여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6. 계속하여 3년이상 해외공사의 수행 실적이 없는 때

제31조(등록취소등이 된자의 해외공사)

- ①제9조제1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효력상실이나 등록취소전에 이

미 계약을 체결한 해외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도급(하도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해외공사와의 경우에는 수행계획을 신고한 해외공사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 까지 해외건설업자로 본다.

③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해외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수행계획을 신고한 해외공사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도급에 의한 해외공사와의 경우에는 수행계획을 신고한 해외공사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32조(경영실태등의 조사)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업자의 사무소 또는 해외공사현장에 출입하여 경영실태 또는 해외공사의 수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대리시공) ①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에게 당해 공사를 대리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시공자와 피대리시공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대체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공사시공에 관한 권리·의무를 지체없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시공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대리시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4조(권한의 위탁)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의견진술) 건설부장관은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수수료) 해외건설업의 등록 또는 개신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37조(벌칙) 해외공사의 부실시공을 하여 준공전에 공사가 중단됨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시 공의 원인을 제공한 자
2.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제38조(벌칙)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후 당해 공사의 파손보수업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내지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그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신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의 수행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해외건설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면허를 받은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현지법인의 설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업자가 설립하거나 인수한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공사수행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중인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건설진흥기금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속하는 재산

(채권·채무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관하여 해외건설협회가 가지는 권리·의무는 건설부장관이 포괄승계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제2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 업등록의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때

② 수출보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는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 대외무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해외공사의 도급 협의로 보며”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④ 항만운송사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 및 용역을”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

해외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해외공사의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며, 그 밖에 해외공사의 도급협의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유도함으로써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도급을 받는 공사만을 해외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도급을 받은 공사외에 해외에서 자체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도 해외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 나. 해외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지금까지는 해외건설시장의 전망과 수주현황등을 감안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시기를 조정하거나 면허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함(법 제6조).
- 다.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추가함(법 제6조제2항).
- 라. 지금까지는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해외공사의 수행계획신고만으로 해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 마. 지금까지는 해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공사의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해외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한도액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도록 함(법 제15조).
- 바. 건설부장관이 등록취소·영업정지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청문절차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법 제35조).